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 등 7단계 제도 개선과제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안 제16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나. 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안 제17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이 제외되는 경우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라. 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80조제1항)

국가공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함.

마.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안 제81조제1항, 제2항)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점장·지사장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

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차목 중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공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중 “10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 -----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u>자치총경: 4년</u>	<u><삭 제></u>
2. <u>자치경정: 3년</u>	<u><삭 제></u>
3. <u>자치경감: 3년</u>	<u><삭 제></u>
4. <u>자치경위: 2년</u>	<u><삭 제></u>
5. <u>자치경사: 2년</u>	<u><삭 제></u>
6. <u>자치경장: 1년</u>	<u><삭 제></u>
7. <u>자치순경: 1년</u>	<u><삭 제></u>
제17조(근속승진) 법 제113조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u>	<u><삭 제></u>
1. <u>자치경감: 자치경위로 10년 이상</u>	
2. <u>자치경위: 자치경사로 6년 6개월 이상</u>	
3. <u>자치경사: 자치경장으로 5년 이상</u>	

4. 자치경장: 자치순경으로 4년 이상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생략)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 자. (생략)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 파.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카. ~ 파.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60조에 따른 국가공기업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 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에 사무소 를 둔 <u>다음 각 호의 공기업</u>을 말한다.	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 의 <u>사용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u> 2.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3. <u>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 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u> 4. <u>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 우</u> 5. <u>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 ----- -----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공공기관-----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
전력거래소

② (생략)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60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
협의회”라 한다)는 각각 의장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 의장은 제주자
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
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지점
장

2. 제주자치도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신설>

-----.

<삭제>

<삭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① -----

----- 20명 -----

-----.

② -----

-----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

공무원

3.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u> ③ (생 략)	<u>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u> 4. ----- ----- <u>사람</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8